

안전보건매뉴얼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직 책	안전보건부서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대표이사
성 명	강석만	박원식	박원식
서명(확인)			
일 자	2024.03.15	2024.04.01	2024.04.01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A. 제·개정 이력	개정차수	0
		페이지	1 / 72

□ 제 · 개정 이력

[illegible]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정일자	2024.04.01.
	B. 문서체계	개정차수	0
		페이지	2 / 72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규정		절차서/지침서	
A	재·개정이력		
B	문서체계		
C	안전보건방침		
D	안전보건조직도		
1.	경영층 안전보건활동		
		0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절차서
2.	근로자 참여 및 협의		
		02	근로자 참여, 의견청취 절차서
		0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절차서
		04	노사협의회 운영 절차서
3.	위험성평가 / 법규준수		
		05	위험성평가 절차서
4.	교육훈련		
5.	비상조치		
		06	중대재해 대비·대응 절차서
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7.	현장 안전보건활동		- 지침서 -
		01	작업장의 안전조치 지침서
		02	총량물·운반기계 안전조치 지침서
		03	개인보호구 지급 및 관리 지침서
		04	위험 기계·기구 관리 지침서
		05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 예방 지침서
		06	전기재해 예방활동 지침서
		07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관리 지침서
		08	건강진단 실시 지침서
		09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지침서
		10	안전작업허가 지침서
		11	비정형작업 재해예방활동 지침서
		12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 지침서
		13	산업재해조사 지침서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04.01.
	C. 안전보건방침	개정 차수	0
		페이지	3 / 72

안전보건 경영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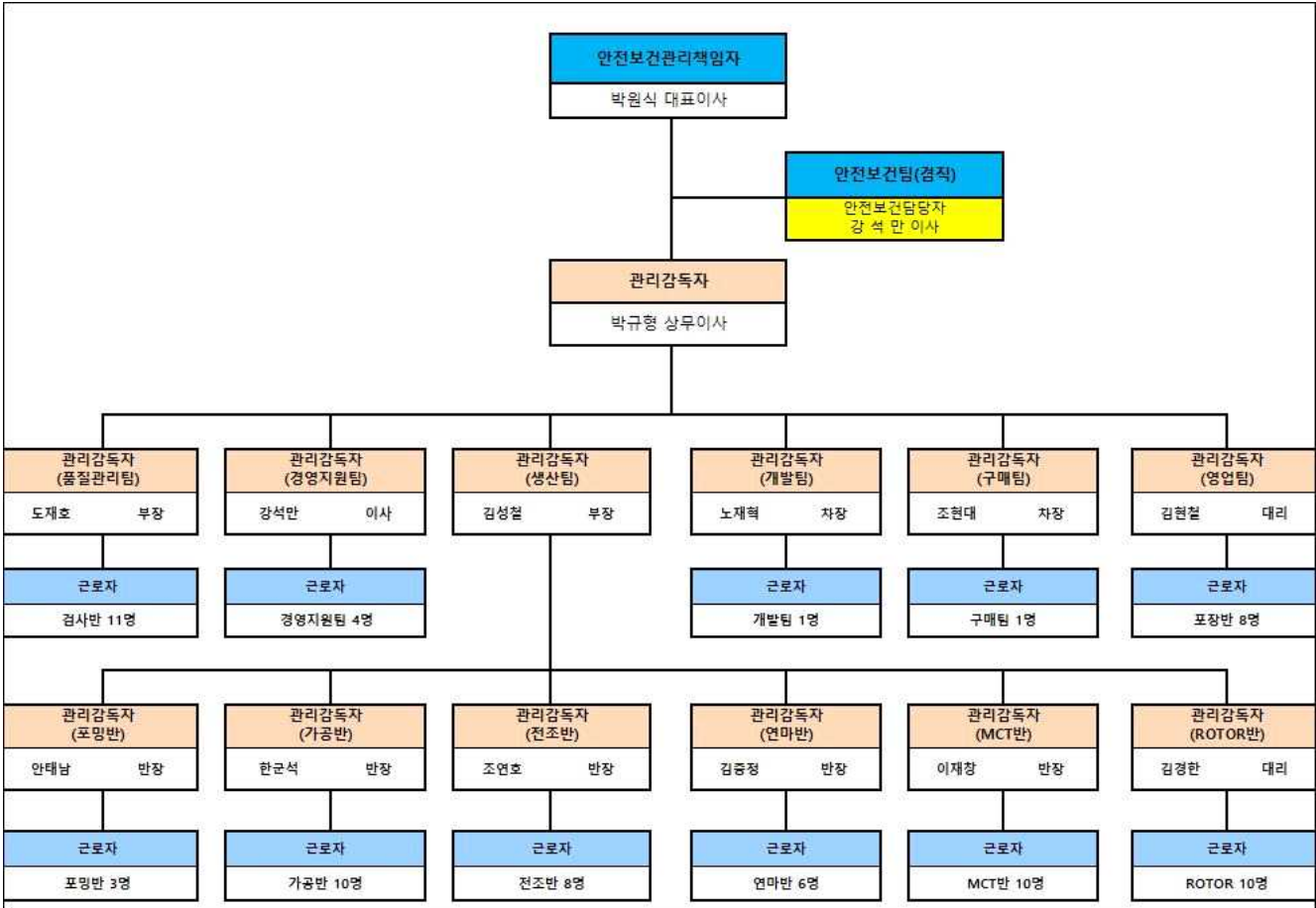
(주) 삼양금속은 인간존중과 안전보건경영을 회사의 핵심가치로 여기며 법규 및 관련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 임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1. 근로자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회사 경영의 핵심요소로 여기며 다른 경영활동과 조화를 도모한다.
2.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와 통제를 위해 충분한 인적,물적자원을 제공한다.
3.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업장내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하여 적절한 예방대책과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4. 안전보건 관계 법규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5. 안전보건 방침과 연계된 안전보건 목표와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6. 안전보건 교육훈련 시스템을 통해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와 현업 활용도를 개선한다.
7.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한다.

2024년 04월 1일

(주)삼양금속 대표이사 박 원 식 (서명)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D. 안전보건조직도	개정차수	0
		페이지	4 / 72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1. 경영층 안전보건활동	개정차수	0
		페이지	5 / 72

1.1 리더십과 방침관리

1.1.1 대표이사는 회사에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는 대표이사의 정책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방침은 국내·외 여건에 대응하고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도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점에서 변경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설정되어 전 임직원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1.1.2 안전보건방침 설정

안전보건방침은 다음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 1) 작업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으로 조성하려는 의지가 표현하여야 한다.
- 2)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실행 및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의지가 포함하여야 한다.
- 3) 법적 요구사항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의 준수의지가 포함하여야 한다.
- 4)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경영철학과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에 대한 의지가 포함하여야 한다.

1.1.3 안전보건방침 의사소통

대표이사는 안전보건방침을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서명과 시행일을 명기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 1) 문서화된 정보로 이용 가능하고 유지되어야 한다.
- 2) 회사의 모든 구성원에게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 숙지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3) 이해관계자가 이용가능하여야 한다.
- 4) 기타 유효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한다.

1.1.4 안전보건방침의 이행

- 1) 대표이사의 공표로 확정된 안전보건 방침은 매뉴얼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 2) 안전보건부서장은 안전보건 목표 및 세부목표 수립 시 안전보건방침을 토대로 설정하여야 한다.
- 3) 안전보건담당자는 전 사원이 내용을 이해하도록 교육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정일자	2024. 04. 01.
	1. 경영층 안전보건활동	개정차수	0
		페이지	6 / 72

1.1.5 안전보건방침의 개정

안전보건부서장은 다음과 같이 제·개정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개정안을 작성하여 이사장 에게 보고한다.

- 1) 신규 사업이 개시되는 경우
- 2)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발생되는 경우
- 3) 경영여건의 변화로 인한 총괄책임자의 의지가 바뀌어 지시가 있을 경우
- 4) 기타 안전보건방침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1.1.6 안전보건방침의 관리

- 1) 대표이사의 공표로 확정된 안전보건방침은 매뉴얼에 포함시켜 관리한다.
- 2) 안전보건방침은 경영자 검토 등을 통하여 연1회 안전보건방침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 3) 안전보건부서장은 이해관계자가 회사의 안전보건방침을 요구할 경우에 공개한다.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1. 경영층 안전보건활동	개정차수	0
		페이지	7 / 72

1.2 조직의 책임, 역할 및 권한

- 1.2.1 안전보건부서장은 공표한 안전보건방침, 목표를 달성하도록 모든 부서에서 안전 보건경영시스템이 이 기준의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실행 및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1.2.2 안전보건부서장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도록 모든 계층별, 부서별로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문서화하여 공유되도록 하여야 한다.
- 1.2.3 최고경영자(대표이사)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어야 하며, 업무수행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1.2.4 회사의 각 계층의 근로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측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1.2.5 안전보건체계조직
회사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별첨 1]와 같으며, 조직의 책임과 권한은 기능에 따라 분류하고 업무분장표에서 정한다.

1) 대표이사 (최고경영자)

대표이사는 회사의 최고경영자로서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① 안전보건경영의 총괄 관리 및 지휘
- ② 안전보건경영방침의 결정 및 안전보건목표 승인
- ③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이행과 관리에 필요한 수단 및 적절한 자원 결정과 제공
- ④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이행 점검 및 확인
- 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운영 문서 승인

2)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대표이사 겸직)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는 회사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다음과 같은 직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①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③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1. 경영층 안전보건활동	개정차수	0
		페이지	8 / 72

-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⑥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⑧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⑨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안전보건부서장

안전보건부서장은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의 성과 측정
- ② 비상사태에 대한 계획 및 대책 수립
- ③ 내부심사 및 경영자 검토 실시 주관
- ④ 안전보건관련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업무의 주관
- ⑤ 작업환경측정 및 유해물질, 유해작업환경 요인의 조치
- ⑥ 직업병 및 근골격계질환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⑦ 관련 업무에 대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대행을 의뢰

4) 안전보건담당자

안전보건담당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안전보건방침과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 작성
- ② 위험성평가 계획수립 및 교육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③ 안전보건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④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⑤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 ⑥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1. 경영층 안전보건활동	개정차수	0
		페이지	9 / 72

- ⑦ 사업장 순회점검 · 지도 및 조치
- ⑧ 기타 안전보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5) 관리감독자(해당 부서장 및 팀/반장)

관리감독자(각 팀장, 조 · 반장)는 소속 작업장 및 근로자에 관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 · 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 ·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 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②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 사용에 관한 교육 · 지도
- ③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④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 · 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 감독
- 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담당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 · 조언에 대한 협조
- ⑥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항목의 업무
 - 유해 · 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 ⑦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 근로자

근로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① 해당작업의 기계설비 등의 방호조치 상태 유지
- ② 개인보호구 착용 및 작업장 정리정돈
- ③ 안전작업수칙의 준수 및 기타 제반 규정의 준수
- ④ 기타 안전보건관련 법령의 준수 등

1.2.6 관련 문서/양식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수행 평가 절차서
- 2) 안전보건체계조직도 [별첨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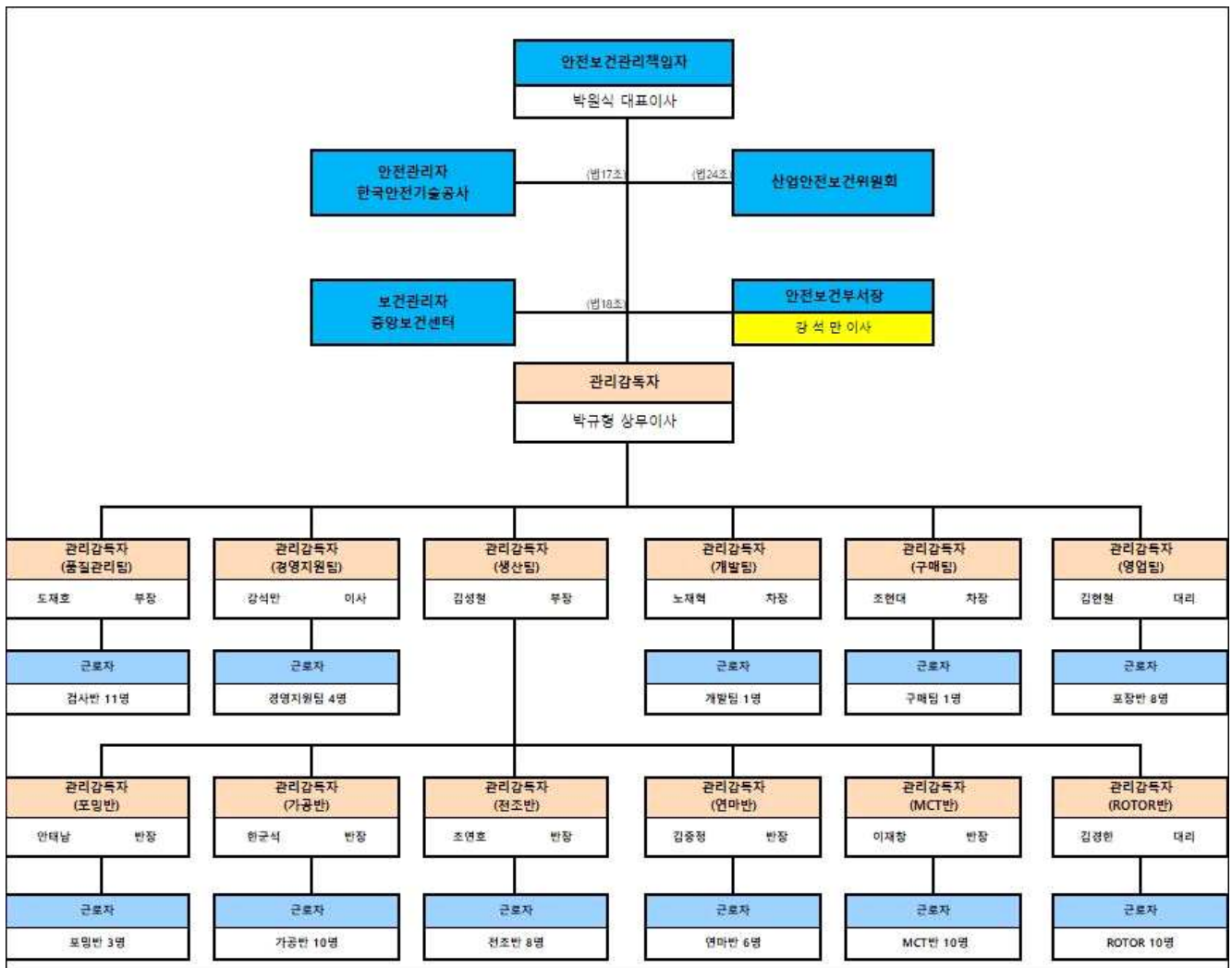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1. 경영층 안전보건활동	개정차수	0
		페이지	10 / 72

- 3) 안전보건 관계자 업무분장표 [별첨 2]
-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양식 1]
- 5)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지정서 [양식 2]
- 6) 관리감독자 지정서 [양식 3]
- 7) 안전보건담당자 지정서 [양식 4]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정일자	2024. 04. 01.
	1. 경영층 안전보건활동	개정차수	0
		페이지	11 / 72

<별첨 1>

안전보건관리체계 조직도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1. 경영층 안전보건활동	개정차수	0
		페이지	12 / 72

안전보건관계자 배치표

구 분	소속부서	성 명	직 무	배치/선임	자격/교육이수	비 고
사업주 (경영책임자)	대표이사	박원식	사업장 안전보건 총괄	24.01.01	관리책임자교육 ()	미이수
사업주 (경영책임자)	대표이사	박원식	위험성평가 책임자	24.01.01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	미이수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경영지원	강석만	안전보건 부서장	24.01.0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	미이수
위험성평가 담당자	경영지원	강석만	위험성평가담당자	24.01.01	위험성평가담당자교육이수 ()	미이수
관리감독자	공장장	박규형	공장 총괄	24.01.01	관리감독자교육 ()	미이수
관리감독자	품질관리팀	도재호	품질관리 및 검사반 총괄	24.01.01	관리감독자교육 ()	미이수
관리감독자	생산팀	김성철	생산업무 총괄	24.01.01	관리감독자교육 ()	미이수
관리감독자	구매팀	조현대	구매업무 총괄	24.01.01	관리감독자교육 ()	미이수
관리감독자	영업팀	김현철	영업 및 포장 업무 총괄	24.01.01	관리감독자교육 ()	미이수
관리감독자	개발팀	노재혁	개발업무 총괄	24.01.01	관리감독자교육 ()	미이수
관리감독자	포밍반	안태남	포밍반 총괄	24.01.01	관리감독자교육 ()	미이수
관리감독자	가공반	한군석	가공반 총괄	24.01.01	관리감독자교육 ()	미이수
관리감독자	전조반	조연호	전조반 총괄	24.01.01	관리감독자교육 ()	미이수
관리감독자	연마반	김중정	연마반 총괄	24.01.01	관리감독자교육 ()	미이수
관리감독자	MCT반	이재장	MCT반 총괄	24.01.01	관리감독자교육 ()	미이수
관리감독자	ROTOR반	김경한	ROTOR반 총괄	24.01.01	관리감독자교육 ()	미이수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1. 경영층 안전보건활동	개정차수	0
		페이지	13 / 72

<별첨 2>

담당자 및 부서별 업무분장표		
담당자 및 부서명	주요 담당업무	비고
본부장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총괄 · 안전보건 교육사항 및 작업환경 관리 총괄 · 근로자 건강진단 및 산업재해 관련 사항 총괄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관리에 관한 사항 · 보호구 구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에 관한 지원 및 검토 · 사내 도급사업장 관련 사항	
안전보건부서장 및 담당자	· 안전보건목표, 추진계획, 비상사태 계획, 대책수립 및 성과측정 · 안전장치, 보호구 구입 및 착용 지도 조언 · 안전보건관련 대내외 이해관계자 의사소통 업무 주관 ·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및 지도조언 · 사업장 순회점검, 교육 및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자 (대행)	· 안전방침, 안전목표 추진계획 작성 및 지도조언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업무, 관련 법규 이행 지도조언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산업재해 원인조사 분석 및 재발방지 기술적 지도조언 · 안전교육 및 위험성평가 지도 조언	
보건관리자 (대행)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업무, 관련 법규 이행 지도조언 · 보건계획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 지도 조언 · 근로자 건강검진실시 및 사후 관리 · 위험성평가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지도 조언	
관리감독자	·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 점검 및 착용·사용 교육·지도 ·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확인·감독 ·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 협조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그 결과 개선조치의 시행 ·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근로자	· 개인 보호구 착용 및 작업장 정리정돈 · 기계설비 등의 방호장치 설치 및 상태 유지 · 안전수칙 및 기타 제반 규정 준수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 이행 ·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이행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정일자	2024. 04. 01.
	1. 경영층 안전보건활동	개정차수	0
		페이지	14 / 72

< 양식 1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소 속 :

성 명 :

직 책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부터 132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24 년 01 월 02 일

삼양금속 대표이사

(인)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정일자	2024. 04. 01.
	1. 경영층 안전보건활동	개정차수	0
		페이지	15 / 72

< 양식 2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지정서

소 속 :

성 명 :

직 책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3조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직무 등에 의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 지정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업무

-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20 년 월 일

삼양금속 대표이사

(인)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정일자	2024. 04. 01.
	1. 경영층 안전보건활동	개정차수	0
		페이지	16 / 72

< 양식 3 >

관리감독자 지정서

소 속 : (주)삼양금속

성 명 : 도 재 호

직 책 : 부 장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안전·보건에 대한 업무를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로 지정합니다.

※ 관리감독자의 업무

-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의 시행
-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24 년 01 월 02 일

삼양금속 대표이사

도 재 호

(인)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1. 경영층 안전보건활동	개정차수	0
		페이지	17 / 72

<양식 4>

안전보건담당자 지정서

소 속 :

성 명 :

직 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을 안전 · 보건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안전보건담당자로 지정합니다.

※ 안전보건담당자의 업무

-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 · 지도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 · 지도
-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 · 지도
-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조언 · 지도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조언 · 지도
- 산업안전 · 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 · 지도

20 년 월 일

삼양금속 대표이사

(인)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1. 경영층 안전보건활동	개정차수	0
		페이지	18 / 72

1.3 안전보건 목표 및 성과평가

1.3.1 안전보건목표 수립

- 1) 안전보건담당자는 안전보건목표 수립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 ① 안전보건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 ② 안전보건경영에 관한 각종 지침
 - ③ 타 사의 우수 안전보건 실천사례
 - ④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을 위한 보유자원활용과 효율성
 - ⑤ 산업재해 통계,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계획 등
- 2) 안전보건목표는 연 1회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목표를 수립한다.
- 3) 수립된 안전보건목표는 안전보건부서장의 검토 후 이사장 에게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 4) 확정된 안전보건목표는 안전보건부서장 또는 안전보건담당자가 각 부서에 배포한다.
- 5) 각 부서별로 배포된 안전보건목표는 관리감독자가 추진하고 안전보건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성과측정을 실시한다.
- 6) 안전보건목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립 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1.3.2 안전보건목표 추진계획

1.3.2.1 추진계획 수립

- 1) 추진계획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추진계획은 안전보건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담당자 선정, 책임과 권한을 포함한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 3) 안전보건담당자는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안전보건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 안전보건담당자는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 수립 시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1. 경영층 안전보건활동	개정차수	0
		페이지	19 / 72

- ① 안전보건목표
- ② 추진일정
- ③ 성과지표
- ④ 우선순위
- ⑤ 담당자 및 담당 부서(팀)
- ⑥ 소요 예산 등

5) 수립된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은 이사장 의 승인을 받는다.

1.3.2.2 추진계획의 변경

- 1) 다음과 같은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부서장은 추진계획의 변경 여부를 판단하여 이사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①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목표를 변경하는 경우
 - ② 재단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변경하는 경우
 - ③ 안전보건 내부심사 결과 추진계획에 부적합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 ④ 안전보건 성과측정 결과 추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⑤ 당사 또는 동종업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⑥ 당해 연도 중 사전 위험성평가결과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경우 등
- 2) 상기 사유의 발생 시 안전보건담당자는 관리감독자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활동 시 이를 참조로 추진계획을 이행한다.

1.3.3 성과평가

- 1) 안전보건부서장은 수립된 목표가 계획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안전 보건 목표 및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성과평가는 안전보건체계의 효과를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안전보건담당자는 다음의 사항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 ① 안전보건방침에 따른 목표가 계획대로 달성되고 있는가를 측정
 - ② 안전보건방침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안전보건추진계획의 적정성과 이행여부 확인
 - ③ 안전보건체계에 필요한 절차서와 안전보건활동 일치성여부의 확인
 - ④ 사고, 아차사고, 업무상재해 발생시 발생원인과 안전보건활동 성과의 관계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1. 경영층 안전보건활동	개정차수	0
		페이지	20 / 72

⑤ 위험성평가에 따른 활동 및 운용

1.3.4 성과평가 결과 이행

- 1) 안전보건부서장은 성과측정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장이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요예산은 이사장 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연간계획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추진계획을 수립·보고한다.
- 2)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해당 부서는 시정조치를 실시한 후, 시정조치 결과를 안전보건담당자에게 통보한다.
- 3) 안전보건담당자는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한다.
- 4) 안전보건담당자는 각 부서의 시정조치결과를 취합하여 안전보건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이사장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5) 성과평가 결과는 경영검토에 반영한다.

1.3.5 관련 문서/양식

- 1)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기준 [별첨 1]
- 2) 안전보건목표 [양식 1]
- 3)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표 [양식 2]
- 4) 안전보건활동 성과평가 [양식 3]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1. 경영층 안전보건활동	개정차수	0
		페이지	21 / 72

<별첨 1>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기준

구분	항목	기준	비고
안전보건방침	방침의 적절성	방침 준수도	게시, 숙지상태
위험성평가	잠재위험의 파악	개선현황	개선이행도
법규파악 준수	법규 입수/근거	법정사항 준수	법규등록부 준수평가표
목표 및 추진계획	적절성 및 실행	계획 대 실적	안전보건 추진계획표 성과측정표
구조 및 책임	권한 및 역할 지정	이행도	관리감독자 지정서 안전보건담당자 지정서
안전보건활동 (운영관리)	운영관리	안전보건활동	현장점검
	교육훈련자격	법 및 내규 충족	교육훈련결과보고서
	문서 및 기록관리	-	문서의 관리상태
비상사태	시나리오 비상조직도	비상훈련 실시보고서	시나리오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1. 경영층 안전보건활동	개정차수	0
		페이지	22 / 72

<양식 1> 안전보건목표

비전				
목표	○ ○ ○			
				
추진 전략				
추진 방향	○ - ○ - ○ - ○ -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1. 경영층 안전보건활동	개정차수	0
		페이지	23 / 72

<양식 2>

[illegible]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1. 경영층 안전보건활동	개정차수	0
		페이지	24 / 72

<양식 3>

2023년 (반기) 안전보건활동 성과평가	결 재	작성	검토	승인

전사목표	목표/세부추진계획		추진일정				성과지표	담당부서	예산 (만원)	달성율	실적/부진사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무재해 달성	정기 위험성평가	계획	○				1회/년 이상	전부서			
		실적									
	수시 위험성평가	계획	○	○	○	○	수시	전부서			
		실적									
	고위험개선	계획	○	○	○	○	개선이행 100%	전부서			
		실적									
	산업안전협의회	계획	○	○	○	○	1건/월/인당	전부서			
		실적									
	작업표준제개정	계획	○	○	○	○	1회/분기	전부서			
		실적									
	합동안전점검	계획	○	○	○	○	변경시	전부서			
		실적									
	비상조치훈련	계획		○		○	1회/반기 (화재, 누출, 대피, 구조)	전부서			
		실적									
	작업허가서 발행	계획	○	○	○	○	단위 작업별	전부서			
		실적									
	작업전 미팅(TBM)실시	계획	○	○	○	○	단위 작업별	전부서			
		실적									
	안전보건예산집행	계획	○	○	○	○	수립예산 이행	전부서			
		실적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계획		○		○	1회/반기	전부서			
		실적									
	시정조치 이행	계획	○	○	○	○	수시	전부서			
		실적									
	경영자 검토	계획				○	1회/년	안전			
		실적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1. 경영층 안전보건활동	개정차수	0
		페이지	25 / 72

1.4 안전보건 예산

1.4.1 안전보건예산 확보·편성

- 1) 안전보건 예산담당부서는 예산담당부서에서 차기년도 각 부서의 예산요청 시 충분한 안전보건 예산을 확보하고 편성하기 위해 사전에 각 부서의 안전보건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검토한다.
- 2) 검토된 안전보건예산은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 후 이사장 에게 승인 받아 확정한다.

1.4.2 안전보건예산 집행

- 1) 안전보건담당자는 차기년도 안전보건예산이 확보되면 경영계획수립 시 목표와 연계하여 안전보건 예산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게 집행계획서를 각 팀에서 취합하여 예산집행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각 부서에 편성 확보된 예산은 해당 부서장의 책임 하에 예산이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한다.

1.4.3 안전보건예산 평가

- 1) 안전보건담당자는 예산집행추진계획서를 반기 1회 이상 각 부서별로 취합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사장에게 보고하고 예산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2) 중대산업사고사고 및 위험성평가 결과 조속히 소요되는 반영되지 않은 안전보건예산에 대해서는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추경반영 등의 조치를 하여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1.4.4 관련 문서/항목

- 1) 안전보건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양식 1]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정일자	2024. 04. 01.
	1. 경영층 안전보건활동	개정차수	0
		페이지	26 / 72

<양식 1>

_____년 안전보건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항목 구분		편성금액	집행 내역		비고
			상반기	하반기	
인력 및 시설 분야	안전보건조직 인건비(대행)				
	안전시설 신규 설치 및 투자				
	위험시설 정비 및 개보수				
안전분야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소요비용(위험성평가)				
	안전·보건시설 설치비 - 안전표지 및 방호장치 등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검사 실시				
	안전보건 진단 및 기술지도비				
보건분야	작업환경측정 실시				
	일반/특수건강검진 실시				
	채용전 건강검진 실시				
	소독방역 실시				
교육홍보분야	안전관리책임자 등 법정 의무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위탁비 포함)				
	안전보건지원 촉진을 위한 캠페인 비용 등				
기타	안전보건 제안 포상				
	안전보건 R&D 비용				
	협력사 안전관리 역량 지원 - 교육 및 시설 지원				
	구급약품 구입				
예비	예비비				
합 계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1. 경영층 안전보건활동	개정차수	0
		페이지	27 / 72

1.5 지속적 개선

1.5.1 일반사항

안전보건부서장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1.5.2 부적합 및 시정조치

- 1) 이사장 는 모니터링, 측정, 분석, 성과평가 결과 및 내부심사 결과 등에 의해서 사건 또는 부적합사항이 발견될 경우 원인을 파악하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자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 2) 안전보건부서장은 시정조치 시 사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취해진 조치에 대한 효과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3) 사건 또는 부적합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부적합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시정조치는 해당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로 실시하여야 한다.
- 4) 안전보건담당자는 시정조치에 따른 변경사항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5.3 시정조치 절차

- 1) 안전보건부서장은 근로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데 따른 관련 부적합사항의 근본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 절차를 수립하고, 문서화한다.
- 2) 부적합사항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시정조치는 문제의 크기와 발생한 안전보건상의 영향에 대응하는 적절한 수준으로 한다.
- 3) 재발우려가 없고 즉시 시정 가능하며 안전보건 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 하지 않는 경미한 부적합사항은 그 내용만 제거하는 단순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 4) 부적합사항별 시정조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안전보건관련 업무 운영 중 발생한 부적합사항(불안전상태, 행동) 적발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해당 부서(팀)장은 개선대책 및 추진 일정을 작성하여 안전보건담당자에게 제출한다.
 - ② 각종 안전보건 관련 제안과 설비점검 및 보수시 발견된 부적합사항이나 심사시 발견된 사항은 안전보건담당자가 취합하여 안전보건부서장의 검토를 거쳐 이사장 에게 보고한다.
 - ③ 시정조치 요구서를 통보받은 부서(팀)장 또는 담당자는 즉시 시정조치하며, 장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1. 경영층 안전보건활동	개정차수	0
		페이지	28 / 72

기적인 조치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선대책 및 개선일정을 작성하여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 ④ 발견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처리한 후 조치결과를 안전보건담당자에게 보고한다.
- ⑤ 관리감독자는 시정조치 후에는 취해진 시정 및 예방조치가 효과적임을 확인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이행한다.

1.5.4 관련 문서/양식

- 1) 시정조치 관리대장 [양식1]
- 2) 시정조치 요구/결과서 [양식2]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1. 경영층 안전보건활동	개정차수	0
		페이지	29 / 72

<양식 1> 시정조치 관리대장

[illegible]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1. 경영층 안전보건활동	개정차수	0
		페이지	30 / 72

<양식 2> 시정조치 요구/결과서

시정조치 요구/결과서

문서번호		☐ 시정조치	☐ 예방조치
발행부서		수 신 처	
작성자		조치책임자	
작성일		회신 요구일	
☐ 성과측정 ☐ 사건/사고 ☐ 내부심사 ☐ 경영자검토 ☐ 기타()			

부적합 사항			
원인분석			
시정요구사항			
	시정조치 요구자		

시정조치 내 용		
	증빙서류	

시정조치 결과보고	시정조치보고일		보고자	(서명)
-----------	---------	--	-----	------

조치 결과	확인내용	확인방법	확인결과
		☐ 문서확인 ☐ 현장확인	☐ 적 합 ☐ 부적합

개선결과 확인	개선결과 확인일		확인자	(서명)
---------	----------	--	-----	------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정일자	2024. 04. 01.
	1. 경영층 안전보건활동	개정차수	0
		페이지	31 / 72

1.6 문서 및 기록관리

1.6.1 문서화

- 1) 안전보건담당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관련 문서를 구성원 모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략하게 작성하고 효과성과 효율성을 위해 최소한도로 유지하여야 한다.
- 2) 문서를 작성하고 갱신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① 식별 및 내용(예: 제목, 날짜, 작성자 또는 문서번호)
 - ② 형식(예: 언어, 소프트웨어 버전, 그래픽) 및 매체(예: 종이, 전자 매체)
 - ③ 적절성 및 충족성에 대한 검토 및 승인

1.6.2 문서관리

- 1) 안전보건담당자는 이 매뉴얼에서 요구하는 모든 문서가 다음의 사항과 같이 관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① 승인된 문서는 적절한 장소에 비치
 - ② 문서는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개정하며 권한을 가진 자가 승인
 - ③ 구(舊)문서는 문서 및 비치장소에서 신속히 제거조치
 - ④ 문서규정에 의하여 또는 보전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구(舊) 문서는 최신문서와 식별되도록 적절하게 조치
 - ⑤ 문서는 읽기 쉽도록 유지되고 쉽게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리
- 2) 안전보건담당자는 문서를 작성하고 수정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책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야 한다.

1.6.3 기록

- 1) 안전보건담당자는 기록의 식별, 유지, 보관, 보호, 검색 및 폐기에 관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2) 기록 관리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배포, 접근, 검색 및 사용
 - 읽을 수 있는 상태로의 보관 및 보존
 - 변경 관리(예: 버전 관리)
 - 보유 및 폐기
-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외부 출처의 기록은 적절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정일자	2024. 04. 01.
	1. 경영층 안전보건활동	개정차수	0
		페이지	32 / 72

하게 식별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4) 기록대상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목록화를 하고 보존기간을 정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 ① 안전보건체계의 계획수립과 관련한 결과물
 - 위험성평가, 법규 등 검토, 안전보건목표,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
- ② 안전보건체계의 지원과 관련한 결과물
 -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교육훈련, 자격보유자목록
- ③ 안전보건체계의 실행과 관련한 결과물
 - 안전보건활동, 비상조치계획서에 따른 실행
- ④ 안전보건체계의 점검 결과물
 -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시정조치
- ⑤ 기타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관련된 활동 결과물

5) 기록은 읽기 쉽고,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1.6.4 관련 문서/양식

- 1) 문서 및 기록물 보존 연한표 [별첨 1]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1. 경영층 안전보건활동	개정차수	0
		페이지	33 / 72

<별첨 1> 문서 및 기록물 보존 연한표

문서 및 양식명	보존기간(년)	담당 팀명	비고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규정	영구	안전보건부서	
안전보건 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5	안전보건부서, 해당 부서	
위험성평가실시 계획	5	안전보건부서	
위험성평가표	5	안전보건부서, 해당 부서	
위험성평가결과 개선계획	5	안전보건부서, 해당 부서	
위험성평가결과 개선결과	5	안전보건부서	
법령개정목록 및 요지 게시	5	안전보건부서, 해당 부서	
준수평가결과표	5	안전보건부서	
조직도 및 업무분장	5	안전보건부서, 해당 부서	
연간 교육훈련계획	5	안전보건부서	
안전보건교육일지	5	해당 부서	
비상대응훈련계획 및 결과	5	안전보건부서	
작업환경측정 결과	3	안전보건부서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결과	3	안전보건부서	
시정요구서 및 조치결과보고서	5	안전보건부서, 해당 부서	
산업재해조사표 및 재발방지계획	5	안전보건부서	
안전보건관련 체크시트	3	안전보건부서	
건강진단 계획 및 결과	5	안전보건부서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2. 근로자 참여 및 협의	개정차수	0
		페이지	34 / 72

2.1 근로자 참여 및 협의

2.1.1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개발, 기획, 실행, 성과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조치에 모든 적용 가능한 계층과 기능의 근로자와 안전보건협의회를 통해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 1) 전년도 안전보건경영 성과
- 2) 해당년도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 이행현황
- 3) 위험성평가결과 제거하고 위험도를 감소하기 위한 개선조치 사항
- 4) 정기적 성과평가 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
- 5) 역량 요구사항, 교육훈련 필요성, 교육훈련 및 교육훈련 평가의 결정
- 6) 사건 및 부적합의 조사 그리고 시정조치 결정

2.1.2 대표이사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듣는 참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2.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2.2.1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는 안전보건목표 설정 및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의 수립 등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분기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2.2.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 의결하여야 한다.

-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3)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4)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5)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6)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2. 근로자 참여 및 협의	개정차수	0
		페이지	35 / 72

2.2.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안건의 협의 또는 해결을 위해 필요 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2.4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 근로자 참여로 이루어진 안전보건 문제 및 활동에 관련된 견해, 개선 아이디어, 관심사항 등은 검토하여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가 회신하여야 한다.

2.2.5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시정이나 개선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부서장이 주관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한다.

2.3 관련 문서/양식

- 1) 근로자의 참여, 의견청취 절차서
-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절차서
- 3) 노사협의회 운영절차서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3. 위험성평가/법규준수	개정차수	0
		페이지	36 / 72

3.1 위험성평가

3.1.1 위험성평가는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와 사업장에 미칠 수 있는 모든 위험기계·기구, 유해물질 및 유해위험공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1.2 시행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위험성평가 절차서”에 따라 실시한다.

3.1.3 위험성평가 대상에는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회사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 2) 회사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위험물질
- 3) 일상적인 작업(수급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 4)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 5) 잠재적 비상상황

3.1.4 위험성평가 시 안전보건담당자 및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 1) 교대작업, 야간노동,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근로자의 안전보건
- 2) 일시고용, 고령자, 외국인 등 취약 계층 근로자의 안전보건
- 3) 교통사고, 체육활동 등 행사 중 재해

3.1.5 위험성평가는 사후적이 아닌 사전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3.1.6 위험성평가 조치계획 수립 시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라야 한다.

- ① 유해위험요인의 제거
- ② 유해위험요인의 대체
- ③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 공학적 대책
- ④ 안전보건표지, 유해위험에 대한 경고, 작업절차서 정비 등 관리적 대책
- ⑤ 개인 보호구의 사용

3.1.7 관련 문서/양식

- 1) 위험성평가 절차서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3. 위험성평가/법규준수	개정차수	0
		페이지	37 / 72

3.2 법규검토 및 준수

3.2.1 법규검토 대상

안전보건관련 법규 검토 대상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하위규정
- 2) 중대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3) 화학물질관리법 및 그 하위규정
- 4)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규정
- 5)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3.2.2 법규 등의 검토 및 조치 절차

- 1) 안전보건담당자는 법규 등의 제 ·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수한다.
 - ① 정부발행 관보 및 인터넷 등을 통한 전산자료
 - ② 안전보건 관련 정기간행물
 - ③ 이해관계자(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재해예방전문기관 등)
- 2) 관리감독자는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그 밖에 기타 요구사항을 입수할 경우 안전보건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안전보건담당자는 회사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 위험성평가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련 법규와 그 밖의 요구사항의 주요 사항을 발췌하여 법규 등록부에 등록 · 관리한다.
- 4) 안전보건담당자는 입수된 법규 등을 검토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부서)에 요지를 통보하고 사내게시판, 전자메일, 회의, 교육 등을 통해 전 근로자에게 공지한다.
- 5) 안전보건담당자는 등록된 안전보건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요소 및 안전보건활동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이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 6) 안전보건담당자는 법규 등을 항상 최신본으로 유지하고 공지된 법규 등의 내용을 보관한다.
- 7) 안전보건부서장은 전 사원 또는 이해관계자의 열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법규집, 법규 등록부 및 법규 요약집을 열람하게 한다.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3. 위험성평가/법규준수	개정차수	0
		페이지	38 / 72

3.2.3 법규준수평가

안전보건담당자는 회사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반기 1회 주기를 정하여 개정내용 등을 검토함으로써 법규준수가 되어야 한다.

3.2.4 관련 문서/양식

- 1) 안전보건법규 목록표 [양식1]
- 2) 안전보건법규 등록부양식 [양식2]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3. 위험성평가/법규준수	개정차수	0
		페이지	39 / 72

<양식 1> 안전보건법규 목록표

안전보건법규 목록표										
법 규 명		등록일	제정일	개 정 일 자						비 고
				1차		2차		3차		
				개정일	시행일	개정일	시행일	개정일	시행일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3. 위험성평가/법규준수	개정차수	0
		페이지	40 / 72

<양식 2> 안전보건법규 등록부

관련법규		안전보건법규 등록부		
법규검토일				
항 목	법규조항	주요 내용	벌칙	당사 대응방안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3. 위험성평가/법규준수	개정차수	0
		페이지	41 / 72

<양식 3> 준수평가 체크리스트

준수평가 체크리스트				
심사일자 : 심사원 : 해당부서 및 대응자 : 법 :				
관련근거	구 분	내 용	준수여부 (모니터링)	비 고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4. 교육훈련	개정차수	0
		페이지	42 / 72

4.1 교육·훈련

4.1.1 교육훈련 기준

- 1) 안전보건담당자는 안전보건 교육훈련의 필요성과 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① 안전보건 방침, 안전보건경영체제상 수행하여야 하는 안전보건활동과 담당자들의 역할 및 책임
 - ② 근로자의 업무 또는 작업이 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
 - ③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내용 및 잔여 위험요인과 그 대책
 - ④ 비상시 대응절차 및 규정된 대응절차로부터 벗어날 때 발생 할 수 있는 2차적 피해
 - ⑤ 화재, 폭발, 누출, 인명손상에 대한 비상훈련 및 대피
 - ⑥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 시행규칙 별표5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 2) 교육대상자와 그에 적합한 교육의 수준은 해당 규정 및 기준 또는 교육내용이 인식되고 적절히 수행되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4.1.2 교육훈련의 필요성 검토 및 계획의 수립

- 1) 안전보건담당자는 매 연초에 회사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보건 관련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한다.
- 2) 대표이사는 안전보건담당자가 작성하여 보고한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4.1.3 교육 형태

대표이사는 근로자 및 안전보건관계자의 안전보건교육은 다음 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 1) 집체교육 : 교육 전용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강의, 발표, 토의 및 토론, 세미나 또는 체험·실습 방식 등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2) 현장교육 : 사업장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위험에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4. 교육훈련	개정차수	0
		페이지	43 / 72

지훈련 등 작업 전·후 실시하는 단시간 안전보건 교육을 포함한다).

- 3) 인터넷 원격교육 :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 4) 비대면 실시간교육 :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강사와 교육생이 쌍방향으로 실시간 소통하면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4.1.3 교육 실시

- 1) 안전보건담당자는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주관하되, 자체실시 가능한 교육은 자체 교육으로 하고, 자체적으로 실시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부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 2) 관리감독자는 연간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3) 안전보건담당자는 교육훈련의 미실시 또는 미 참석자에 대해서는 추가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4)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 특별교육은 3분의 2 이상을 4.1.2 교육형태의 1) 집체교육, 2) 현장교육, 4) 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하여야 한다.

4.1.4 교육 성과평가

안전보건담당자는 교육훈련 종료 후 차기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차기 교육훈련에 반영해야 한다.

4.1.5 교육훈련 강사의 자격

교육훈련 강사는 관련 자격 인정기준에 따라 다음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위탁기관담당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산업안전보건공단 실시 강사요원 과정 이수자,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술사 및 기타 고용노동부장관리 인정하는 자(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강사기준
- 2)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표이사가 강사로 인정하는 자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4. 교육훈련	개정차수	0
		페이지	44 / 72

4.1.6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정기교육	사무직 및 판매업무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별첨 1
	그 외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별첨 1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제외)	2시간 이상	별첨 1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최초 작업 종사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실시 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실시	16시간 이상*	

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내용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별첨 1
채용시 교육	8시간 이상	별첨 1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2시간 이상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 최초 작업 종사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실시 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 실시	별첨 1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4. 교육훈련	개정차수	0
		페이지	45 / 72

3) 특수고용형태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내용
최초노무제공시 교육	2시간 이상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는 1시간 이상 -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면제	별첨 1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실시 가능	별첨 1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는 2시간 이상	별첨 1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직무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교육내용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6시간 이상 보수 6시간 이상	별첨 1 ① 신규교육 : 선임된 후 3개월 (의사인 보건관리자는 1년) 이내 이수 ② 보수교육 :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 · 후 6개월 사이에 이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신규 34시간 이상 보수 24시간 이상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신규 34시간 이상 보수 24시간 이상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신규 34시간 이상 보수 24시간 이상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신규 34시간 이상 보수 24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보수 8시간 이상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	신규 34시간 이상 보수 24시간 이상	

5)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 ① 교육대상 : 해당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 ② 교육방법 : 정기교육에 포함하여 실시, 최초 작업전 1시간 이상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4. 교육훈련	개정차수	0
		페이지	46 / 72

4.1.7 관련 문서/양식

- 1) [별첨 1]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 2) [별첨 2]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 3) [양식 1] 안전보건교육 계획표
- 4) [양식 2] 안전보건교육 일지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4. 교육훈련	개정차수	0
		페이지	47 / 72

[별첨 1]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 제1항 관련)

가. 정기교육

[근로자]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정기교육 특례
○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안전보건교육규정 제9조제7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를 근로자 등 안전보건교육의 강사로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안전보건교육규정 제9조제8항)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4. 교육훈련	개정차수	0
		페이지	48 / 72

[관리감독자]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정기교육 특례
○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가 근로자 등 안전보건교육의 강사로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4. 교육훈련	개정차수	0
		페이지	49 / 72

나.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근로자]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4. 교육훈련	개정차수	0
		페이지	50 / 72

다. 특별교육 (특별교육 대상 작업 39종을 수행하는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작업명	교육내용
<공통내용> 제1호부터 제39호까지의 작업	나. 채용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과 같음

<개별내용>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 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 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 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 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 한다)	○ 고기압 장애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시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 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 단 또는 가열작업(발생 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 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 한다)	○ 용접 흠,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 항 ○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불꽃이 나 오는 용접기의 앞부분)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 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 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 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4. 교육훈련	개정차수	0
		페이지	51 / 72

전기용접 작업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 ○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 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에 관한 사항 ○ 발생장치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 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 각 계측장치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 ○ 투시창·수위 및 유량계 등의 점검 및 밸브의 조작 주의에 관한 사항 ○ 세척액의 유해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	○ 차단장치·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4. 교육훈련	개정차수	0
		페이지	52 / 72

업	한 사항 ○ 탱크 내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절차·방법 및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 분말·원재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저장탱크 내부작업 및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지정·방법·순서 및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팬·풍기(風旗) 조작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분진 폭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 건조설비 내외면 및 기기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건조 시 유해가스 및 고열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건조설비에 의한 화재·폭발 예방에 관한 사항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4. 교육훈련	개정차수	0
		페이지	53 / 72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 (정격소비전력이 10킬 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 는 집재장치(집재기·가 선·운반기구·지주 및 이 들에 부착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 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 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 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 이 7.5킬로와트를 넘 는 것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 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 킬로그램 이상인 것	○ 기계의 브레이크 비상정지장치 및 운반경로, 각종 기능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 시작 전 준비사항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취급물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구조상의 이상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 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	○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에 관한 사항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4. 교육훈련	개정차수	0
		페이지	54 / 72

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프레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2. 목재가공용 기계[동근 톱기계, 띠톱기계, 대패 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 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만 해당 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목재가공용 기계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의 종류와 구조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 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걸고리·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飛來)·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4. 교육훈련	개정차수	0
		페이지	55 / 72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6. 주물 및 단조(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일) 작업	○ 고열물의 재료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출탕·주조 및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고열작업의 유해·위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 및 중량물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정전작업·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 콘크리트 해체 요령과 방호거리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파쇄기의 조작 및 공통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방호장비 등에 관한 사항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4. 교육훈련	개정차수	0
		페이지	56 / 72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 작업안전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동바리의 운반·취급 및 설치 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 해체작업 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 작업환경의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재료의 운반 및 취급·설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4. 교육훈련	개정차수	0
		페이지	57 / 72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원부재료의 취급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물건의 위험성·낙하 및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적재방법 및 전도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 하역 기계·기구의 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운반·이송경로의 안전작업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중량물 취급 요령과 신호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과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	○ 건립 및 버팀대의 설치순서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추락재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 건립용 기계의 조작 및 작업신호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장비 착용 및 해체순서에 관한 사항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4. 교육훈련	개정차수	0
		페이지	58 / 72

만 해당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강도·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조립·설치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 (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 콘크리트 해체기계의 점점에 관한 사항 ○ 파괴 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신호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해체·파괴 시의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 기계 및 기기 점화장치 계측기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열관리 및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4. 교육훈련	개정차수	0
		페이지	59 / 72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 (물관을 사용하여 가열시키는 방식의 보일러)	
32. 게이지 압력을 제공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압력용기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용기 취급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 방사선의 유해·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방사선의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방호거리·방호벽 및 방사선물질의 취급 요령에 관한 사항 ○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작업내용·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장비·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4. 교육훈련	개정차수	0
		페이지	60 / 72

35. 허가 또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6. 로봇작업	○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37. 석면해체·제거작업	○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8.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보관·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으로 인한 불꽃, 불티 등의 흩날림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9. 타워크레인을 사용하	○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특성 및 방호장치 등에 관한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정일자	2024. 04. 01.
	4. 교육훈련	개정차수	0
		페이지	61 / 72

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교육대상	교육내용	
	신규과정	보수과정
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1)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2)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바.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1)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3) 사업장 순회점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기계·기구의 적격품 선정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4. 교육훈련	개정차수	0
		페이지	62 / 72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교육내용
아래의 내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나.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 제1호 라목과 같다.

5.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교육내용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4. 교육훈련	개정차수	0
		페이지	63 / 72

[별첨 2]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제3조의2, 제10조, 제15조 관련)

-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이사장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이 사람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사람
 -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과 보건관리전문기관, 법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및 법 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소방공무원 및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국가면허 취득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자) 또는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국가면허 또는 국가자격·학위 취득자)
 - 「의료법」 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및 보고듣고말하기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4. 교육훈련	개정차수	0
		페이지	64 / 72

<양식 1> 안전보건교육 계획표

안전보건교육계획	결재	작성	검토	승인

No	교육구분			교육과정	일정												대상인원	교육방법 (내·외부)	비고
	안전보건	공정안전	수급업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	○	○	○	○	○	○	○	○	○	○	전사원	집체 (내부)	
2	○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발생시	집체 (내부)	
3	○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교육						○							1명	집체 (외부)	2년 주기
4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6명	집체 (외부)	매년
5	○			특별안전보건 교육													발생시	집체 (내부)	
6	○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훈련					○						○		전사원	집체 (내부)	매년
7	○			물질안전보건 교육													발생시	집체 (내부)	
8	○			작업내용 변경자 교육													발생시	집체 (내부)	
9	○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1명	집체 (외부)	3년 주기
10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1명	집체 (외부)	3년 주기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4. 교육훈련	개정차수	0
		페이지	65 / 72

<양식 2> 안전보건교육 일지

()월 안전보건 교육일지	결 재	작 성	승 인

교육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분)			
교육제목			강 사	
교육구분	☐ 정기교육 ☐ 채용시 교육 ☐ 특별안전교육 ☐ 작업변경시			
교육장소	☐ 강의(집합)형 ☐ 현장교육형(OJT) ☐ 실습체험형(Hand-on)			
교육인원			미 실시자 수	
교육내용 (교재별첨)	* 첨부 :			
특기사항				
교육결과	양호	보통	미흡	의 견
유의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보건교육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임. 2) 수합된 교육실시 결과표는 소속부서에서 3년간 보관 및 관리함.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4. 교육훈련	개정차수	0
		페이지	66 / 72

교 육 참 석 자 명 단							
연번	소 속	성 명	서 명	연번	소 속	성 명	서 명
1				31			
2				32			
3				33			
4				34			
5				35			
6				36			
7				37			
8				38			
9				39			
10				40			
11				41			
12				42			
13				43			
14				44			
15				45			
16				46			
17				47			
18				48			
19				49			
20				50			
21				51			
22				52			
23				53			
24				54			
25				55			
26				56			
27				57			
28				58			
29				59			
30				60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5. 비상조치	개정차수	0
		페이지	67 / 72

5.1 비상시 대비 및 대응

5.1.1 안전보건부서장은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산업사고 또는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파악한 잠재적인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작성하고 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5.1.2 안전보건담당자는 사업장의 특성 · 규모 · 위치 등을 고려하여 수립된 "비상시 대비 및 대응 절차서"에 따라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비상사태 대응 훈련 후에는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시 개정·보완하여야 한다.

5.1.3 안전보건담당자는 비상시 대비 및 대응 내용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1)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장비 보유현황
- 2) 사고발생 시 각 부서(팀), 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3)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 4) 비상조치 계획에 따른 교육·훈련계획
- 5)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6) 비상시 대피절차와 재해자에 대한 구조, 응급조치 절차

5.1.4 안전보건담당자는 비상시 대비 및 대응 내용에 인근주민 및 환경에 대한 영향과 대응 및 홍보 방안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5.1.5 안전보건부서장은 비상시 대비 및 대응과 관련된 교육 · 훈련에 안전보건상의 영향을 받는 모든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필요시 이해관계자도 참여시킬 수 있다.

5.1.6 외부 기관 또는 사업장과 합동으로 비상시 대비 및 대응과 관련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본사의 교육 · 훈련으로 갈음할 수 있다.

5.1.7 관련 문서/양식

- 1) 중대재해 대비·대응 절차서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6.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개정차수	0
		페이지	68 / 72

6.1 도급사업의 검토

안전보건상 유해·위험한 다음 작업을 분리 도급 내지 하도급을 할 때에는 해당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 1) 도급작업
- 2) 수은·납·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주입·가공·가열하는 작업
- 3)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 작업
- 4) 그 밖에 유해·위험한 작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6.2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

6.2.1 안전보건부서장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건활동에 대하여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양식 1)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1) 새로운 수급/수급업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2) 등록된 업체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매년)
- 3) 안전보건부서장의 판단 또는 관련 사업부서장의 요청에 의해 대상 업체를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6.2.2 안전보건부서장은 평가결과를 평가 후 15일 이내에 해당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6.2.3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는 안전보건부서장의 안전보건수준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결과[별첨 1] ‘70점’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 수급업체로 등록한다.

6.2.4 60~70점인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후 재평가하여 70점 이상으로 개선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다.

6.2.5 해당 사업부서는 등록된 업체에 대한 현황을 최신의 것으로 관리한다.

6.3 협의체 구성 및 운영

6.3.1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는 수급인 사업주 전원을 포함하여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6.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개정차수	0
		페이지	69 / 72

6.3.2 협의체 계획수립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
- 2) 협의체 심의의결사항 및 시행 방안
- 3) 도급인, 수급인간 책임과 권한 명확화

6.3.3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6.3.4 협의체는 다음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 1) 작업의 시작 시간
- 2) 작업 또는 작업장간의 연락 방법
- 3)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 방법
- 4)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5) 작업장의 순회점검 및 합동점검 결과 및 개선사항
- 5) 도급인과 수급업체(수급인) 또는 수급업체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6.4 수급업체와의 안전보건 소통채널 구축·운영

안전보건담당자는 수급업체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안전보건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조치를 위하여 수급업체 안전보건담당자와 별도의 소통채널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6.5 위험성평가

6.5.1 수급업체는 해당 작업 및 해당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사업 부서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수급업체 또는 수급업체 간의 작업 및 위험요인이 서로 관련되는 경우 이를 조정·관리하여야 한다.

6.5.2 안전보건담당자는 수급업체의 위험성평가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발적으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6.5.3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에는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 내용,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5년간 보존한다.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6.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개정차수	0
		페이지	70 / 72

6.6 사업장 안전보건점검

6.6.1 해당 관리감독자는 작업장을 2일에 1회이상 순회점검 실시하여야 한다.

6.6.2 수급업체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되며,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6.7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해당 사업부서장은 수급업체 사업주와 점검반을 구성하여 분기 1회 이상 또는 수시로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한다.

6.8 산업재해 위험 예방조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는 수급업체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보건시설 설치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실시하여야 한다.

6.9 작업환경

6.9.1 해당 사업부서장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업체 근로자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6.9.2 수급업체가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자는 수급업체의 작업장소를 포함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6.10 안전작업허가서 확인

6.10.1 도급작업이 화재, 폭발, 누출, 질식, 추락, 감전 등의 유해·위험한 작업인 경우 사전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해당 사업부서로부터 현장의 위험요인과 안전보건조치 이행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확인받고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6.10.2 안전작업허가서의 작성 및 실행에 관한 사항은 “안전작업허가지침”에 따른다.

6.11 기계·기구, 설비 및 화학물질의 확인

6.11.1 관리감독자는 사내 수급사에서 취급하는 기계·기구, 설비의 방호조치 및 방호장치의 탈락, 손상 등의 유무를 확인하고 불량 시 기술 지도를 통하여 안전하게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6.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개정차수	0
		페이지	71 / 72

작업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11.2 도급사업장 내에서 수급업체 근로자가 취급하는 안전검사 대상품에 대하여 안전 검사 실시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초과한 경우에는 기계·기구, 설비를 반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11.3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은 “안전검사 지침”에 따른다.

6.11.4 도급사업장 내에서 수급업체 근로자가 취급 또는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취급 및 사용에 대한 물질명, 장소, 양, MSDS 여부, 유해성 등을 확인하고 교육 및 적절한 보호구 착용 등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경우 기술 지도를 통하여 안전하게 작업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12 안전보건 조치 이행

6.12.1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는 수급업체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업체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6.12.2 수급업체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6.13 수급업체사 안전보건교육 지도 및 지원

6.13.1 수급업체가 도급사업장 내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법정 안전보건교육(채용시, 정기,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고자 할 때 도급인은 수급업체의 원활한 교육실시를 위하여 교육장소, 교육자료, 강사 등 필요한 사항을 지도 및 지원하여야 한다.

6.13.2 수급업체 근로자가 작업을 실시하기 전 도급인은 안전보건수칙 및 특별 위험작업 등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실시한다.

- 1) 작업투입 전 작업내용
- 2) 안전작업을 위한 주지사항
- 3) 보호구 착용 등에 대한 교육

6.13.3 교육은 관련 관리감독자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안전확인서에 승인한다.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6.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개정차수	0
		페이지	72 / 72

6.14 안전보건 정보제공

6.14.1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 3)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 4) 유해하거나 위험한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6.14.2 수급업체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6.14.3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6.15 관련 문서/양식

- 1)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양식 1]
- 2) 수급업체 안전보건 정기평가표 [양식 2]
- 3)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양식 3]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6.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개정차수	0
		페이지	73 / 72

[별첨 1]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사업장명: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점수
I 안전보건관리체계	도급·용역·위탁받는 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40	
• 리더십	• 경영방침,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 배정의 적정성 등	10	
• 근로자 참여	• 종사자 의견수렴 절차 및 이행 적정성	10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절차 및 수준의 적정성	10	
•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계획 적정성	10	
II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 관리계획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한 안전 보건관리 계획 적정성	60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방법의 적정성 (위험성평가 및 대책의 적정성)	15	
• 자원 배정(시설·장비)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15	
• 자원 배정(인력)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인력 배정 및 운영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15	
• 비상조치계획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시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15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6.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개정차수	0
		페이지	74 / 72

[별첨 2]

■ _____년 수급업체 안전보건 정기 평가표

결 재	담 당	책임자

■ 평가대상 사업장명 :

평가자 의견	평가등급	
	상반기	하반기

※ 평가등급: A(90점 이상), B(80점 이상), C(70점 이상), D(60점 미만), E(60점 미만)

■ 평가 기준

NO.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점수
1	사업주의 관심	책임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업자의 안전보건방침 부합여부	10	
2	안전보건회의 실시	도급사업장 협의체 회의 참석여부	10	
3	위험요인 파악제거 (위험성평가)	위험요인 파악, 제거 및 통제 방법의 적정성 근로자의 참여 (위험성평가 및 대책수립)	10	
4	보호구 지급,착용	적정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	10	
5	근로자 교육	작업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10	
6	안전점검	작업전 안전점검, 안전보건 정기 점검 실시	10	
7	자원 배정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적정인원 배정 및 운영 (안전관리 선임, 전문업체 대행 등)	10	
8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취급 기계기구의 안전성 확인	10	
9	비상조치계획	비상시 작업중지, 대피 등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비상연락망 등 연락체계 구축	10	
10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여부	10	
감점사항		사망 또는 반기 2건이상 재해발생 10점 반기 1건이상 재해 발생 5점		
합 계			100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6.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개정차수	0
		페이지	75 / 72

■ 등 급

등급	득점	이행수준
A	90점 이상	도급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B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
C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D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E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6.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개정차수	0
		페이지	76 / 72

<붙임 3>

20 년 월 도급사업 협의체 회의록

일 시		장 소		회의종류	☐ 정기, ☐ 임시
전 분기 협의사항 이행 결과					
협의 및 의결사항					
비 고					

회의참석자			
업 체 명	공 정 명	직 위	성 명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 04. 01.
	6.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개정차수	0
		페이지	77 / 72

도급사업 작업장 순회점검 일지

일 시	202 년 월 일 시 ~ 시	결	점검자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장 소		재		
안 전 조 치 사 항	1)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 2)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 : 3) 안전조치 및 절차 이행상태 : 4) 기타 사항 ○			
작 업 장 개 선 필요사항	1) 안전장치 동작상태 2) 작업동선 확보여부 3) 기타 개선 필요사항 ○			

특이사항 / 중요 위험사항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04.01.
	7. 안전보건활동	개정차수	0
		페이지	78 / 72

도급사업 작업장 합동점검 일지

일시	202년 월 일 시 ~ 시		결 재	안전관리자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장소					
사진기록					
개선 필요사항	1) 2) 3)				

도급인 점검자	서명	수급인 점검자	서명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04.01.
	7. 안전보건활동	개정차수	0
		페이지	79 / 72

7.1 유해·위험 예방조치

관리감독자는 작업 및 업무활동에서 직원의 위험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1.1 작업장의 안전조치

- 1) 작업장 바닥의 미끄럼방지과 안전통로 구분, 정리정돈, 안전표시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유지·보수 및 점검 등 적절한 현장관리가 되어야 한다.
- 2) 시행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작업장의 안전조치 지침서에 따른다.

7.1.2 중량물·운반기계에 대한 안전조치

- 1)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양중기 및 지게차와 같이 화물운반 및 하역기계 사용작업 시 안전한 작업방법 및 운전자 등 관계자의 준수사항과 운행경로, 안전조치, 점검, 정비 등의 안전조치 기준이 적합하게 수립되고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 2) 시행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중량물·운반기계에 대한 안전조치 지침서에 따른다.

7.1.3 개인보호구 지급 및 관리

- 1) 근로자에게 작업상 필요한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사용하고, 예비품을 비치하는 등 착용, 지급 및 관리가 제도화되어 있어야 한다.
- 2) 시행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보호구 지급 및 관리 지침서에 따른다.

7.1.4 떨어짐·무너짐에 의한 위험방지

- 1) 개구부 방호, 안전대 설치, 승강설비 설치, 구멍구 설치, 울타리 설치, 조명유지 등 떨어짐 위험방지 조치와 무너짐·맞음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7.1.5 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는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방호조치하고, 잠재위험이 없도록 보수·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 2) 작업장 내 안전검사 대상품이 파악되고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 3) 시행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지침서에 따른다.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04.01.
	7. 안전보건활동	개정차수	0
		페이지	80 / 72

7.1.6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예방활동

- 1)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산화성 등의 위험물질의 취급·저장·관리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2)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수점검 계획에 의거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비상시 대피요령을 알고 있어야 한다.
- 3) 화학설비, 압력용기 등은 건축물의 구조 검토, 부식 방지, 밸브 개폐방향 표시, 안전밸브·파열판·화염방지기 설치, 계측장치·자동경보장치·긴급차단장치 설치 등 위험방지조치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 4) 시행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예방활동 지침서에 의한다.

7.1.7 전기재해 예방활동

- 1)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를 위해 전기기계·기구 및 가설전기설비에 방호조치를 하고 정기적으로 유지·보수하는 예방활동을 시행하고 있어야 한다.
- 2) 전기설비 또는 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도록 등급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 3) 시행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전기재해 예방활동 지침서에 의한다.

7.1.8 안전보건표지 부착

해당 부서장은 담당업무 영역내의 유해·위험시설, 위험장소,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의 지시나 안내사항 또는 안전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적절한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7.2 보건관리

7.2.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 1) 유해화학물질 취급근로자의 건강장해 및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급 유해물질을 목록화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 또는 게시하고 경고표지 부착 및 취급 작업자에 대한 교육 등 관련규정을 이행하고 있어야 한다.
- 2) 시행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지침서에 따른다.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04.01.
	7. 안전보건활동	개정차수	0
		페이지	81 / 72

7.2.2 작업환경 유지관리

- 1)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리적인자(소음, 진동, 유해광선 등) 및 화학적인자(분진, 유기화합물, 중금속, 산·알칼리 등) 등의 유해인자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적절한 개선조치를 하고 있어야 한다.

7.2.3 건강진단

- 1)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하고 있어야 한다.
- 2) 회사가 지정한 의사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고 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 할 수 있다.
- 3) 시행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건강진단 지침서에 따른다.

7.2.4 근로자 건강보호 예방활동

- 1) 분진작업 등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위험군 작업을 평가하여 근로자 건강보호에 활용하여야 한다.
- 2)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위험군 작업을 평가하여 근로자 건강보호에 활용하여야 한다.
- 3) 소음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위험군 작업을 평가하여 근로자 건강보호에 활용하여야 한다.
- 4) 반복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등 근골격계질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해위험요인평가를 통하여 근로자 건강보호에 활용하여야 한다.
- 5) 시행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지침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지침서, 청력보존 프로그램 지침서,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지침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7.2.5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 1) 야간작업 등 직무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는 직종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위험군 작업을 평가하여 근로자 건강보호에 활용하여야 한다.
- 2) 시행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지침서에 따른다.

7.3 안전보건활동 운영관리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04.01.
	7. 안전보건활동	개정차수	0
		페이지	82 / 72

7.3.1 안전작업허가

- 1) 관리감독자 또는 각 사업부서의 장은 회사 내에서 화기작업, 밀폐작업, 굴착작업, 중량물작업, 정전작업, 고소작업과 같은 일반작업 또는 비일상작업을 시행할 경우 폭발, 누출, 질식, 감전, 추락 등의 재해예방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작업 수행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 지휘하여야 한다.
- 2) 시행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안전작업허가 지침서에 따른다.

7.3.2 비정형작업 재해예방 활동

- 1) 기계 등의 정비·청소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로 이루어지는 비정형작업은 작업시작 전에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파악과 제거하는 등 위험성평가 절차에 따라 안전보건이 확보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2) 기계·설비 등의 정비·보수 작업 시 운전을 정지하고 불시기동 방지를 위한 잠금장치(L/O) 및 표시장치(T/O)를 실시하고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3) 시행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비정형작업 재해예방활동 지침서에 따른다.

7.3.3 작업 전 안전회의(TBM) 활동

- 1) 조직 여건에 맞게 작업 전 안전회의(TBM) 등으로 작업 전에 위험요인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알리고 점검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 2) 근로자들에게 위험관리를 위한 의견을 제안받는 안전제안활동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3) 근로자가 작업 도중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과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 4) 시행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작업 전 안전회의(TBM) 지침서에 따른다.

7.3.4 안전순찰

- 1) 안전보건부서장은 소관된 업무영역별로 수시로 순회점검을 실시한다.
- 2) 순회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기계·기구 및 설비주변의 청소, 정리정돈 및 복장상태
 - ② 방호장치의 부착상태
 - ③ 유해·위험물질 등의 취급, 적재,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주)삼양금속 SAMYANGMETAL.CO.,LTD	안전보건매뉴얼	문서번호	SY-EHS-01
		제 · 정일자	2024.04.01.
	7. 안전보건활동	개정차수	0
		페이지	83 / 72

- ④ 안전수칙의 게시상태 및 작업자의 안전수칙 이행상태
 - ⑤ 보호구의 착용 및 각종 표지판의 관리상태
 - ⑥ 기타 필요한 사항
- 3) 안전보건부서장은 현장 순회 점검 시 발견된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 또는 관리감독자에게 시정할 것을 지도·조언하며, 특히 유해·위험방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조치서를 발부할 수 있다.

7.4 관련 문서/양식

- 1) 작업장의 안전조치 지침서
- 2) 중량물·운반기계 안전조치 지침서
- 3) 개인보호구 지급 및 관리 지침서
- 4) 위험기계·기구 관리 지침서
- 5)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예방 지침서
- 6) 전기재해 예방활동 지침서
- 7)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관리 지침서
- 8) 건강진단 실시 지침서
- 9)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지침서
- 10) 안전작업 허가 지침서
- 11) 비정형작업 재해예방활동 지침서
- 12) 작업전 안전회의(TBM) 지침서
- 13) 산업재해조사 지침서